

# 보건복지 제464호 (2026-05)

## ISSUE & FOCUS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4. 20. ISSN 2092-7117

## 신청주의 논쟁의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sup>1)</sup>

이현주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2025년 하반기 신청주의 논쟁은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 해당 발언은 신청을 생계형 사건·사고의 발생 원인, 사회보장제도 비수급 문제와 연관 지어 자동 지급 도입, 제도의 확충이라는 입장 사이 논쟁으로 이어졌음.
- 논쟁의 주요 쟁점은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과 신청 절차의 연관성, 신청 절차의 의의와 부작용, 신청 폐기 시 행정 정보 인프라의 대응력에 대한 판단 차이로 요약할 수 있음.
- 신청주의 논쟁이 신청 절차의 성급한 폐기로 이어지기보다 국민이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원인, 수급 누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은 현금지원제도의 부족에 한정되지 않음. 돌봄과 간병 부담, 의료비 부담, 정신적 질환, 부채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사회서비스 등 지원의 실효적 확충이 필요.
- 국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인지 및 신청을 방해하는 제도적 요인에 대한 파악과 제도 개선도 권리 보장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임.

### 이. '신청주의' 개념 정의와 논쟁의 배경

#### ◆ '신청주의'의 개념 정의

- 신청주의는 법적·행정적 처리와 결정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의할 수 있음.

1) 이 글은 김기태, 강신욱, 김태완, 노대명, 이현주, 함영진, 김성아, 이원진, 임덕영, 임완섭, 정은희, 오성재, 이다미, 이주미, 최준영. (2025).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 내용을 요약·보완·재정리한 것임.

-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11조 1항에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 조항에는 '다만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권 신청, 대리 신청의 근거도 적시되어 있음.
- 신청주의는 이념적 지향이라기보다는 행정적 운영 원칙에 가까우며, 이러한 점을 확인하는 남찬섭의 개념 정의는 유의할 만함(남찬섭, 2025a. 11. 14).
- '신청주의'에 대한 최근의 개념적 접근
  - 2020년대 이후 '신청주의'는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각종 생계형 사건사고 발생 시 '모르면 못 받는' 복지제도에 대한 비판 기사에 자주 등장하였음(김기태 외, 2025, pp. 42-43).
  -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신청은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는 행정절차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임.
  - 2025년 신청주의 대안을 모색하는 글에서 신청주의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예를 볼 수 있음(정용제, 2025, p. 1).
    - '복지 신청주의는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혜 자격을 갖춘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에 신청해야만 급여 지급 절차가 개시되는 기존의 수동적 운영 방식을 의미'한다고 정의.
  - 언론 보도 등에서는 주로 공공부조제도,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신청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청주의 논쟁에서는 보편적 지원 등 거의 모든 사회보장제도에 대하여 신청의 의미와 적용의 한계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 ◆ 2025년 하반기 신청주의 논쟁의 배경과 주요 내용

- 2025년 하반기의 '신청주의' 논쟁은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복지제도를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발언.
  -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회보장제도명이 자주 변경되거나 정보가 복잡하다는 제도 환경도 문제로 언급.
  - "정보화 사회라서 다 알고 있는데, 짝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청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고 발언하면서 최근 보편적 복지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선별적 복지와 달리 신청 절차를 전제할 이유가 적다는 의미의 언급도 이어졌음.

## 02. '신청주의' 논쟁의 개요와 쟁점

### ◆ 신청주의 논쟁의 개요

- 2025년 8월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신청절차 폐지'와 '신청주의가 문제의 핵심 원인이 아니며, 잔여적 복지의 극복이 중요하다'는 두 가지 입장 사이의 논쟁이 이어짐(김기태 외, 2025, p. 10).
- 노대명(2025a, 2025b, 2025c)은 "복지 신청주의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이나 가족관계 등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었던 시대의 유물"이라며 "신청주의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

- 노대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초점으로 신청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준 완화를 제안하기도 하였음.
- 신청절차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은 기존의 행정 인프라를 고려할 때 신청 절차 없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거나, 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임.
- 남찬섭(2025a, 2025b)은 “잔인한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복지 억제 정책 기조와 잔여주의”라며 현재 복지정책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신청주의가 아니라고 주장.
  - 잔여적 복지의 극복을 주장하는 입장은 신청 절차가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이 아니며 정책의 불충분성, 엄격한 자산 조사형 제도 운영이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
- 중도적·실용적 입장도 등장.
  - 신청이 필요한 복지에만 신청하도록 하는 원칙 전환이 개혁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존재(우석진, 2025).
    - 소득·재산을 정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급여나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려야 하는 제도는 조사가 불가피함을 수용.
  - 2025년 9월의 복지부 장관의 관련 발언도 중도적·실용적 입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 복지부 장관은 9월 29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아동수당 등 보편적인 현금 서비스에 자동 지급을 먼저 적용하겠다”고 언급(성서호, 고미혜, 2025. 9. 30.).
    - 반면 선별 급여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방식 개선, 실시간 소득·재산 반영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로운 입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추진할 것임을 밝힘.

### ◆ 신청주의 논쟁의 주요 쟁점

- 신청주의 논쟁에서 검토하여 볼 주요 쟁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신청 절차가 사회보장 사각지대, 비수급이나 수급 누락의 원인인가?
- 신청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청 절차는 폐기하는 것이 답인가?
- 필요한 정보의 확보 가능성 등 행정 인프라를 고려할 때 신청 절차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

## 03. 신청주의 논쟁의 쟁점 1: 신청이 복지 사각지대, 수급 누락의 원인인가?

### ◆ 생계형 사건·사고, 복지 사각지대와 신청 절차의 관계에 대한 언급

- 복지 사각지대와 연관되어 언급되는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신청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는 2020년 이후(김기태 외, 2025, p. 42).
  - 언론에서는 자주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신청 절차를 지적하고, 정부는 정책 대응으로 주로 사각지대 발굴을 강조, 강화하여 왔음(함영진 외, 2022, pp. 33-37).
  - 신청 절차가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이라면 생계형 사건·사고에 대한 사후적인 원인 분석에서라도 이 점이 확인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으로 더 자주 언급되는 것은 정책 대응의 부족임.

◆ **주요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

-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신청과 같은 행정절차를 원인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예를 들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의 원인은 공공부조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병원비 부담, 신용불량, 근로소득 상실 등이었음.

〈표 1〉 신청주의 관련 사망사건 개요

	송파 세 모녀 사건	대구 부자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익산 모녀 사건
시기 및 유형	2014년 / 자살	2021년 / 간병 방치	2022년 / 자살	2025년 / 사인 불명 및 자살
발생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도 기준 질병·의료비 부담 채무·신용불량 상해와 소득단절	간병 부담 고액 의료비 부담 공과금 체납 사회적 고립	부채·추심 전입신고 회피 가족의 질병과 사망 정신적 어려움	질환, 정신적 질환 취업으로 인한 수급 중단 제도 기준에 대한 정보 및 이해 부족 의료비 부담

출처: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김기태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2의 〈표 2-10〉을 재구성.

- 복지 사각지대라 불리는 생계형 사건·사고의 주된 원인은 기존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돌봄·간병·의료비 부담, 정신장애 등 사회적 위험임.
  -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sup>2)</sup>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2021년 6년간 발굴한 복지 사각지대의 지원 대상자 중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공공지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사례가 적지 않음. 상시 지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을 받은 대상은 4.3%뿐이었음.<sup>3)</sup>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을 고려할 때 단순하게 신청 폐지를 정책 대안으로 볼 수 있는지 모호.
  - 한편 사각지대 등 생계형 사건·사고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와 같은 선별적 소득보장 확충을 대안으로 보는 입장에 대한 반성적 성찰도 필요.

◆ **사회보장제도 미신청, 비수급 이유가 신청 절차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음.**

- 엄격한 기준, 복잡한 제도 구성과 기준 등으로 인한 제도 인지의 어려움이 중요 원인일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의료급여를 중심으로 비수급 빈곤층 중 수급 비희망(필요 없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미신청 이유를 조사한 결과(임완섭 외, 2023, pp. 485-486)에 의하면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가 19.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음. 그리고 ‘제도를 잘 몰라서’가 1.9%였음.
    - ‘신청 절차 및 선정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는 1.3%의 응답을 보였음.

2)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제정,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도입.

3) 복지 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람. 참여연대. (2022. 8. 29).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16년~’21년)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05199>

-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필요할 때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OECD, 2020, p. 37)이 높음.
  - 한국 74%, 캐나다 73.7%, 핀란드 71.4%로 높게 나타남.
  - 부정적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급여에 대한 접근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57.6%가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고 응답.
- 한국에서는 많은 수의 작은 규모 사회보장제도가 운영 중에 있어 제도 구조가 복잡하고 소득인정액과 같이 인지가 쉽지 않은 기준이 다수 정책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 2024년 기준 중앙부처 372개, 지자체 434개 사회보장제도 운영 중(복지로 기준)(이현주 외, 2024. p. 50).<sup>4)</sup>
  - 2019년 기준 개인과 가구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분석한 연구(강신욱 외, 2022)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는 사업 33개 중 소득인정액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은 18개로 약 55%에 이름(강신욱 외, 2022, p. 228).
- 미신청, 수급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제도의 엄격한 기준이나 제도에 대한 인지 어려움과 인지 부족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신청 절차의 복잡함도 원인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수용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중요 원인에 대해서는 진지한 속고가 필요.

## 04. 신청주의 논쟁의 쟁점 2: 신청의 의미가 무엇인가? 신청을 폐기하는 것이 답인가?

### ◆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국민의 급여 신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행정청의 처분, 권리 실현의 중요한 시작.
  - 신청은 행정청에 권리와 관련된 처분을 요구, 권리 실현을 요청하는 절차임. 따라서 ‘권리로 인정된 지원’에 한하여 신청 조항을 두어 운영하는 경향이 있음.
    - 행정청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지체 없이 정해진 법에 따라 신청자의 권리 확인을 하여야 함.
- 행정절차법의 신청 규정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
  -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신청과 신청에 따른 행정청, 신청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적시.
  - 신청한 경우 해당 권리 보장을 위한 적절한 행정적 대응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 신청은 신청 이후 누락, 지연, 과오지급 등 처리의 과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
  - 소득과 재산의 변화뿐 아니라 질병과 입원, 장애 발생 등 전 국민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는 여건에서 신청과 신청에 따른 책임 이행은 권리 보장의 중요한 단계.
- 제도 목적 달성에 기여.
  - 신청은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는 과정 또는 인지 후 과정으로서 결과적으로 제도 목적 달성의 전제.
    - 신청한 제도가 무슨 제도인지, 그리고 수급한 지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수급자가 인지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

4) <https://www.bokjiro.go.kr/ssid-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 2024. 7. 7. 인출. 이현주·함영진·김희성·최혜진·류진아·김종수·박노욱·우하린. 2024. 사회보장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관계 체계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에서 재인용.

- 보육정책 확대 효과를 분석한 2018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무상보육은 고소득층의 시설보육 비용을 증가시켰음(이채정, 2018, p. 179). 만약 수급자가 급여 지급의 이유, 목적을 잘 인지하지 못할 경우 목적 외 급여의 사용이 커질 개연성이 존재.
- 간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연구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자면 정책 이해가 부족할수록 전반적 정책에 대해 실패한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임도빈 외, 2012, p. 17). 또한 시민 생활에서 공공 활동에 관한 관여 경험이 적을수록 정부 성과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
- 신청은 국민 행정 참여의 중요한 통로로서 의미를 지님.
  - 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을 보면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음.
  - 국민이 제도에 대하여 인지하고, 신청 관련 경험이 누적되는 것은 복지 정책의 주체로서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 자동 지급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희소하나 Hansson(2024)의 연구는 신청자가 배제되는 의사결정의 부작용을 시사(김기태 외, 2025, p. 67에서 재인용).
    - 스웨덴의 구직자 14명을 인터뷰한 결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ADM)이 인간적인 접촉과 의사결정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구직자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구직자를 소외시킬 위험을 초래함.

## 05. 신청주의 논쟁의 쟁점 3: 행정 환경을 고려할 때 신청 없이 급여 지급이 가능한가?

- 현재의 행정전산화 수준을 고려할 때 신청 없이, 수급권자의 정보 제공 동의와 정보 제공 없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괄, 처리할 수 있는가?

### ◆ 행정 정보의 불완전성과 행정 부담 고려 필요

- 행정 정보의 포괄성 부족과 시차가 지니는 한계.
  -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예를 들어 주식 등 일부 재산, 조세 행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소득(면세 소득 등), 근로 능력, 통장 정보 등이 모두 정확하게 행정 자료로 수집되어 있지 않음.
  - 한편 아직 대부분의 행정 정보 수집 시점은 현재 시점과 시차가 존재하는 과거 정보로 한정되어 있음. 즉 수급 결정 시점과의 시차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
    - 2000년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배경에는 선별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 부재가 존재(장우현 외, 2025, pp. 84-85).
- 행정비 부담과 법적 기반의 불안정성.
  - 신청이 없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소득 정보의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대상이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될 수 있음(장우현 외, 2025, p. 98).
  - 신청 절차가 없다면 행정비용이 더 커지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더 커질 위험이 존재.
    - 신청이 없다면 특정 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민 전수에 대하여 수시로 필요 정보를 수집하고 수급권 확인을 하여야 함.

## ◆ 신청과 권리 보장을 위한 책임의 명확화

-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권리 입증을 위한 신청과 필요 정보의 제공 또는 제공 동의가 필요.
  - 행정 정보의 불충분한 수준 등 행정 여건의 불완전성을 고려할 때 수급 누락, 행정 오류로 인한 과하거나 부족한 급여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위험도 있음.
  - 소득·재산 조사에 근거하는 급여에서 선지급·사후정산 모델을 도입하는 경우 본인이 유발하지 않은 행정적 오류에 대하여 수급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논리적·실질적 오류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 06. 신청주의 논쟁이 남긴 과제

-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모색해야 함.
  - 대통령 발언의 핵심 요지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국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구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 필요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제도의 불비, 불충분성을 행정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과거 방식은 극복해야 함.
- 생계형 사건·사고의 원인, 수급 누락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보강하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함.
  - 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합리적 대응의 전제임. 정신적 장애, 돌봄과 간병, 의료비 부담 등에 대응하는 제도의 확충은 생계형 사건·사고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함.
  - 제도를 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 다만 신청 절차의 복잡함이 문제로 남아 있으므로 신청 절차를 개선, 신청을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 될 수 있음.
- 만약 신청 절차의 간소화,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면 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여야 할 것임.
  - 보편적 지원을 시작으로 하고 가치제 성격의 서비스를 선별적 현금지원보다 우선 추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변화를 기획하더라도 대상자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부작용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여야 함.

참고문헌

강신욱,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정은희, 남윤재, 전지현, 정해식, 김미복, 김안나. (2022). **소득보장제도 DB 구축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기태, 강신욱, 김태완, 노대명, 이현주, 함영진, 김성아, 이원진, 임덕영, 임완섭, 정은희, 오성재, 이다미, 이주미, 최준영. (2025).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남찬섭. (2025a. 11. 14.). 신청주의는 본질 아니다...자동지급제보다 수급자격 완화가 우선. **소셜코리아**.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828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82824&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남찬섭. (2025b. 9. 22.). 신청주의냐, 자동지급이나? 궁극적 본질은 복지의 사각지도를 해소하는 것.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0>

노대명. (2025a. 10. 14.). '잔인한' 신청주의라니? 복지는 신청 아닌 권리다! **르몽드 디플로마티카**. <https://www.ilemond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8>.

노대명. (2025b. 10. 13.). 신청주의는 여전히 잔인...복지는 신청 아닌 권리다. **소셜코리아**. <https://www.socialkorea.org/news/articleView.html?idxno=4734>

노대명. (2025c. 9. 15.). 이재명 대통령이 쓰아올린 탈신청주의, 보편복지 활짝 열까. **소셜코리아**. <https://www.socialkorea.org/news/articleView.html?idxno=4678>

성서호, 고미혜. (2025. 9. 30.). 아동수당 등 보편 현금급여부터 자동지급 추진. **연합뉴스**.

우석진. (2025. 8. 17.). **복지의 진정한 혁신, 신청주의를 넘어**.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71957015>

이재정. (2018). **보육정책 확대의 과정과 효과 연구: 자녀양육부담의 탈가족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도빈, 정현정, 강은영. (2012). 정책이해도가 정책성과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부경쟁력의 관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2), 1-29.

임완섭, 김문길, 김태완, 김기태, 황도경, 오미애, 정해식, 김성아, 이원진, 이아영, 임덕영, 정세정, 윤상용, 박형준, 김민희, 이길제, 이용하, 신봉하, ... 신재동. (2023).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함영진·김희성·최혜진·류진아·김종수·박노옥·우하린. 2024. 사회보장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관계 체계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우현, 김문정, 박주철. (2025).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재정정책방향:소득파악 인프라에 기반한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348호, 80-105.

정용제. (2025). '복지 탈신청주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해외 주요국 사례 검토 및 주요 법률 개정 방안. NARS **현안분석, 제373호**.

참여연대. (2022. 8. 29.). **복지사각지대 온라인 시스템 현황 분석('16년~'21년) 결과 발표** [보도자료].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05199>

함영진, 이현주, 어유경, 김가희, 이영글, 문용필, 조용찬. (2022). **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대안적 고찰: 취약계층 발굴정책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ansson, E. (2024). *Constrained self-determination and self-development: Understanding user experiences connected to automated decision-making in employment and welfare systems* (Master's thesis). Lund University. <https://lup.lub.lu.se/student-papers/search/publication/9193666>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05M.do>

OECD. (2020). *Main Findings from the 2020 Risks that Matter Survey* (RTM).

집필 이현주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의: 044-287-8200